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5

2023. 11. 30.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 2023. 11. 10.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 2023. 11.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30.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의 제한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로 한다.(안 제6조) → 삭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서용관)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가 법률에 명시됨에 존속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연장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 질의·답변요지 :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